

규제에서 자율로, 『환경흡닥터』제도의 시행

환경부 환경기술과 차승환 과장

1.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국제무역에서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PPMs (생산공정 및 방법) 및 LCA(전과정평가) 등 생산공정 전 과정에서의 환경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오염물질 관리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어 2차 오염을 유발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후처리방식을 벗어나 사전예방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미 EPA(환경보호처)는 '80년대부터 사전오염예방정책인 P2 (Pollution Prevention) 활동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90년에는 사전오염예방법(Pollution Preven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년대에는 환경청이 구성되어 조직정비와 함께 사후처리에 매달려 왔으나 '90년대부터는 환경정책에 쓰레기 종량제 등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를 착수하거나 보완하여 왔다. 특히 '90년대 후반에는 에너지정책의 개선으로 「청정연료 공급」을 확대하고, 「환경친화기업 제도」, 「자율환경관리제도(Voluntary Agreement)」, 미국의 TRI(Toxics Release Inventory)제도와 유사한 「화학물질유통량보고제도」 등을 도입하여, 사전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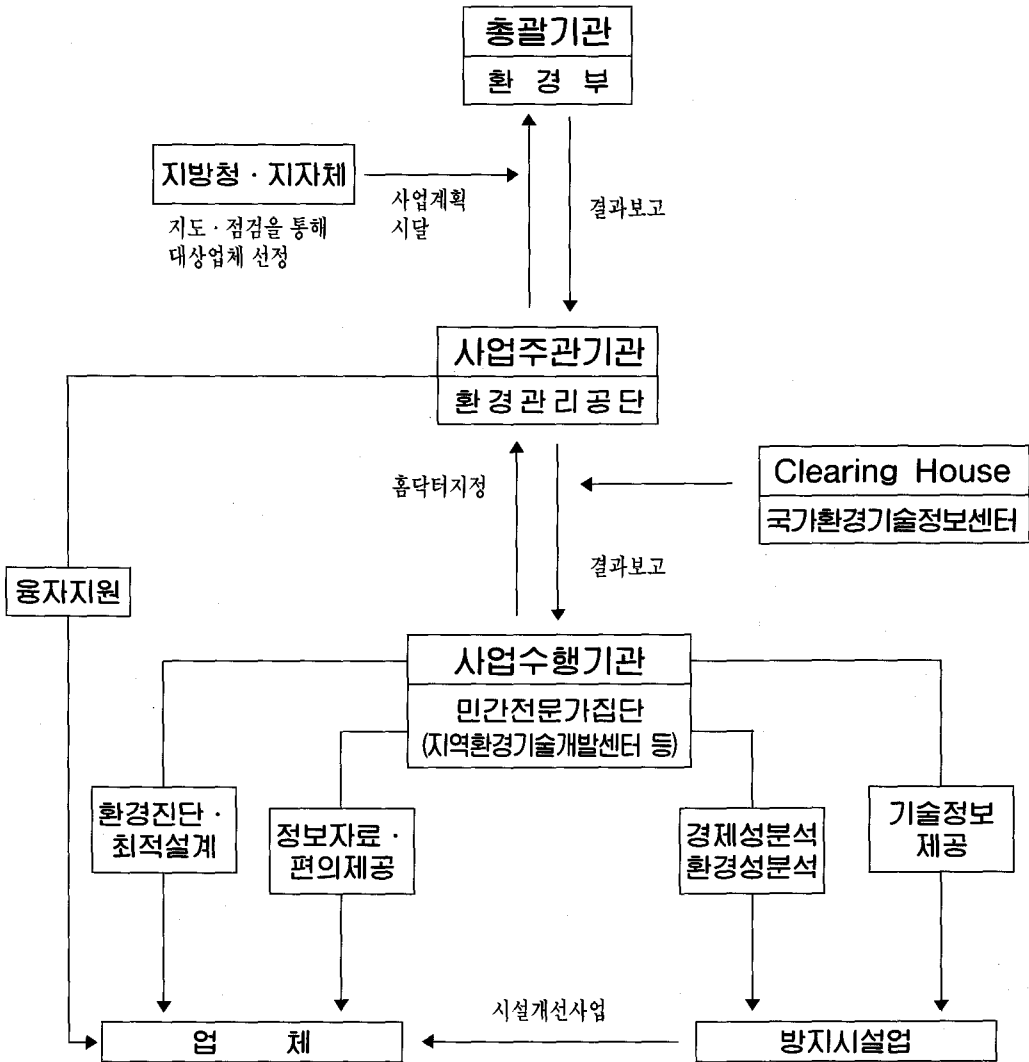
염예방체계 구축에 착수하였다. 올해에는 새로이 제품의 생산 및 폐기에 따른 오염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인 「LCA(Life Cycle Assessment)」 제도를 법에 반영하였다.

환경부는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적 여건 및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 방향을 감안하여 사전오염체계구축의 일환으로 환경오염 진단·개선을 책임지도하는 환경전문가(또는 환경컨설팅 업체)를 업체별로 “흡닥터”로 지정하여 공정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환경흡닥터』 제도를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정된 ‘흡닥터’가 업체의 환경관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도록 기술지도함으로써 업체 입장에서는 배출된 오염물질의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고 정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오염물질 저감에 의한 환경보전을 실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업추진체계

『환경흡닥터』사업에 의해 단속과 처벌위주의 관 주도



〈환경흡닥터〉 사업 추진체계도

환경관리방식을 자율적,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도단속, 기술진단, 기술개발 및 개선사업 기능과 연계, 통합 운영하고자 한다.

즉, 환경부의 총괄 하에 지방환경청, 시·도,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ETC)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전예방, 사후처리 및 생태복원 등 전 공정에 걸쳐 기술관리 및 환경경영 실태를 종합진단하여 자율적인 개선사업 유도하고, 업체의 적극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환경홈닥터』제도의 시행을 위해 환경부는 국내·외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치밀한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환경홈닥터』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2001년 상반기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홈닥터』제도의 절차, 비용부담 기준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외국 관련제도의 검토 및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범위, 지원방안 등을 조사 중이다.

과 홍보대책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지방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지도 점검을 통한 불량·개선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업체의 특성에 따라 적정 홈닥터를 지정함으로써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한 후, 업체로 하여금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체계로 진행되며 그 추진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지자체 및 지방 환경관리청은 위반정도에 따라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환경관리공단은 실무적으로 기술진단업무를 총괄한다. 즉,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업체별 홈닥터를 지정하고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는 기술진단 및 최적 대안을 도출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방지시설업체 및 컨설팅업체를 초기부터 참여시켜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체가 홈닥터에 의해 기술지도를 받는 기간 중에는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종래 배출시설 개선 시에만 지급하여 온 환경개선 융자금을 홈닥터의 진단에 따른 공정개선 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3. 향후 추진계획

『환경홈닥터』제도의 시행을 위해 환경부는 국내·외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치밀한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환경홈닥터』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2001년 상반기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홈닥터』제도의 절차, 비용부담 기준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외국 관련제도의 검토 및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범위, 지원방안 등을 조사 중이다.

둘째로, 환경부는 동 제도의 핵심인 기술진단비용(컨설팅비용)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 중인 기술지원 업무는 기술지원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하며(중소환경기술지원 소요사업비는 전액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연간 3억원 내외에 불과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기 곤란), 시료분석비의 경우 지원대상시설(중소기업)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어, 비용부담 기피로 실험분석에 의한 실증적 효율의 검토가 곤란하여 지원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술지원 소요사업비의 재원 확보가 동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환경홈닥터』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화학산업체의 청정생산기법 활성화 연구(수행기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와 “환경홈닥터제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수행기관 : 삼성엔지니어링(주))”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결과에 의해 『환경홈닥터』사업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1년에 착수하는 「Eco-technopia 21」사업에 “사전오염예방기술개발사업”을 포함시켜홈닥터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함과 동시에 2001년도 하반기부터 소규모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의 환경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컨소시엄의 형태로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하여 동 사업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